

###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2011.10.21)

자본시장법 제 89 조, 동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 등에 따라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(1 개월)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- 아 래 -

1. 공시사유 발생일: 2011 년 10 월 20 일

2. 공시사항:

가.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입니다.

나.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대상펀드: 아래 펀드

(단위:원)

| 펀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회표준코드       | 원본액         | 순자산총액       | 기준가격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A  | KR5370926895 | 393,198,133 | 349,515,625 | 888.9  |
|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C1 | KR5370926903 | 72,126,377  | 63,800,681  | 884.57 |
|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I  | KR5370926911 | 125,884,278 | 112,701,249 | 895.28 |
|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C2 | KR5370938494 | 76,350,584  | 67,620,338  | 885.66 |
| AB 글로벌 성장주 증권 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종류형 C3 | KR5370938502 | 28,030,498  | 24,118,768  | 860.45 |

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(주)  
대표이사 이석재